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65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신정훈・박지원・조 국

박해철 • 이기헌 • 이상식

윤준병 · 김재원 · 권칠승

김문수 · 양부남 · 조계원

문대림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. 특히,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.

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 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,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).

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6(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1. 유아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
  - 2.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

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,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,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5(보호자의 의무 등) ①	제21조의4(보호자의 의무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
	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
	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
	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
	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
	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
	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21조의6(보호자에 대한 교육
	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	는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
	교육할 책임을 지는 교육의 주
	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
	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
	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에 필요
	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	1. 유아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
	으로 하는 교육
	2.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에 참
	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
	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교육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보호
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교 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, 제 2항에 따른 교육 실시,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